**투자자문업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에이피자산운용(주)**

제정 2022. 04 . 13

제1조 (목적)

본 기준 및 절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제22조 제3항에 의거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

자자를 차별하여 수수료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

하여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 규정 및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 등(이하 “관련 법규”라고 한다)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 및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투자자문”이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 수량∙

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

는 것을 말한다.

②“기본수수료”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자문계약재산

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

된 금액으로서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운용성과

와 상관없이 투자자로부터 받는 보수를 말한다.

③“성과수수료”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종료일

(중도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일)에 계약자산을 평가하여 계약체

-1/5-

결시점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성과 수수료 부과기준을 충

족한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④“기준지표 등”이라 함은 성과수수료를 수령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목표수익률 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지

표 또는 회사와 고객간 합의에 의하여 정한 기준수익률을 말

한다.

제4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각 일임계약의 개별성

을 고려하여 책정하되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

는 아니된다.

②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 투자자의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③ 수수료 수준은 계약의 특성,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인정가능

한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 계약 기준으로 경영진이

결정한다.

④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

자자와 합의하여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서에 수수료 계산방법,

수수료 계산기간 및 수수료 지급시기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

⑤ 투자자문계약 수수료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여

투자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수료 계산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투자자와 합의하는 계약서에 따른다.

제5조(수수료 체계)

투자자는 회사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수수료 지급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수료율

-2/5-

은 회사의 수수료 정책을 기본으로 투자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

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전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기본형을 원칙으로 하고 기본수수료는 투자자문계약 체결 시점의 투자자문자산액을 기준으로 증권자문의 경우는 1.3%(부가가치세 별도), 부동산자문의 경우는 1.8%(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

1. 기본수수료만 지급 (이하 ‘기본형’이라 한다.)

2.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지급 (이하 ‘혼합형’이라 한다.)

3. 성과수수료만 지급 (이하 ‘성과형’ 이라 한다.)

제6조(성과수수료의 수령 기준)

회사는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인 경우

2.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는 경우

가. 성과수수료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준지표 등에 연동하여 산정될 것

나. 운용성과가 기준지표 등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수수

료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게

되는 보수체계를 갖출 것

다. 운용성과가 기준지표 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그 운용성과

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그 밖에 성과수수료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7조 (자문계약의 증액 및 감액, 중도해지 등)

1. 투자자문계약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증액금액에 계약잔여

-3/5-

 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

② 계약이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또는

순자산총액에 운용경과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며 계

약해지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기본수수료의 환급 및 해지수

수료의 납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계약의 중도해지시 해당계약과 관련한 대가를 미리 지급받은

때에는 미경과운용일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투자자에게 반환

한다.

④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감액금액에 운용경과일수를 계

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며, 수수료를 미리 지급받은 때에는 감

액금액에 계약잔여 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반환한다.

⑤ 계약의 감액 또는 중도해지시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설명의무)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1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 (공시 및 통보)

회사는 법 제 58조 1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

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법 제 58조 3항에 의거 이 기

준을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투자 광고)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4/5-

제11조 (기준의 제정 및 개정)

이 기준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제정 및 개정한다. 다만, 이사의 수

가 2인 이하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의 사전

검토 및 협조 절차를 거쳐 대표이사가 개정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투자자문업 등록일부터 시행한다.

-5/5-